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9. 6 선고 2024가단31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학식

변론 종결2024. 8. 23.

판결 선고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① 피고와 C 사이에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주택 1,2층 전부(513.155m², 이하 '이 사건 횃집'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 ② 피고는 F에게 위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G(원고 남편), H은 2019. 4.경 이 사건 횃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횃집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억 원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9. 4. 10. 이 사건 횃집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나. C는 G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2021. 12.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증증서¹⁾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령시 D' 소재 'E횃집'을 2022. 1. 2.자로 영업양도하고, 채무자는 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영업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채무자는 이를 차용금으로 간주하여 아래 각 조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약하며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채무금 1억 2,000만 원을 2022. 1. 4.부터 2024. 4. 16.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당 100만 원씩 120회 분할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3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다. C은 2021. 12.경 F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연 1억 1,000만 원(매년 4월 20일까지 선지급)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C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21. 12. 29.2) F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21. 12. 30. F(며느리인 J이 수령)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2022. 7. 5. 이 사건 횃집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앞으로 마쳤다.

마. 원고는 2023. 2. 24. C를 채무자로,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타채142)을 득하였다.

바. 피고는 2023. 3. 8. F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연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피고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차임으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사. F는 2023. 11.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I의 배우자인 K에게 1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아. 원고는 2024.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2, 3,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앞으로 C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C이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여전히 이 사건 횡집에서 일하고 있는 점, 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C의 각 임대차계약서와 서식 등이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가 C의 매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취소와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까지 받았는바, F가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당시 C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C 앞으로 남아 있던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F가 C이나 피고가 아닌 I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F가 이처럼 돈을 지급한 데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는 근거 외에 달리 I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허위라고도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홍관

- 1)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C를 의미한다.
- 2) 통지서는 2021. 12. 20.자로 작성되었으나, 내용증명 우편이 2021. 12. 29. 발송되었다.